

●법무부공고 제2026-37호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3조 및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34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,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「정부보관금취급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04일

법무부 장관

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공고에 관한 사항

- 공고 사유: 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송달 불가능
- 공고 기간: 2026. 2. 4. ~ 2026. 3. 19.

2. 계약에 관한 사항

계 약 번 호	10120708
계 약 일	2010. 7. 28.
계 약 건 명	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증축공사(건축)

3. 보관금에 관한 사항

보 관 금 명		하자보수보증금
납 부 일		2011. 6. 13.
납 부 자	상 호 명	송명건설(주) (대표자 심기주)
	주 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6-3 성덕빌딩 401호
보 관 금 액	원 금	181,730원
	이 자	0원

4. 환급 및 국고귀속 안내

- 위 계약 상대방은 「정부보관금취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기 납부한 계약 보증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환급 요청 기한 내에 환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 보증금은 「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」 제1조 및 「정부보관금취급규칙」 제22조에 따라 국고 귀속됩니다.
- 환급 요청 기한: 공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
- 국고 귀속 예정일: 공고 기간 마지막 날이 경과한 다음 날

5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운영지원과(전화 02-2110-3076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